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29
----------	-------

2019. 4. 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
- 나. 제 출 일 : 2019. 3. 22.
- 다. 회 부 일 : 2019. 3. 25.

2. 제출이유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법령 현황에 맞는 용어 및 명칭 변경
 - 1)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 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3)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안 제21조)
 - 4) 기금의 용도 중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다. 조례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반영

- 1)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변경(안 제1조)
- 2) '현금구좌'를 '현금계좌'로 변경(안 제4조)
- 3) 사람을 지칭하는 '자'를 '사람'으로 변경(안 제5조)
- 4)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변경(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9. 2. 21.~ 3. 13.(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포구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제명 및 주요 조문 검토

1) 조례 명칭 변경

-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 수립 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당하나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

2) 용어 변경

-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변경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과 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타당함.

<표 1. 용어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비고
옥외광고업자	옥외광고사업자	안 제3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안 제5조

3) 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 신설(안 제2조)

- 안 제2조(기금의 재원)의 개정은 「옥외광고물법」이 2007년12월21일 개정⁶⁾되면서 법령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 방법에

6)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대하여 위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으로 타당함. 다만, 최초 조례 제정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고려하면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 따라서 그 동안의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기금의 용도 중 광고물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1항 제6호)

-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금의 활용목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 사항에 따른 것임.

5) 기타 조문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음.

<표 2. 용어 순화>

현 행	개 정	비고
관하여 필요	필요	안 제1조
현금구좌	현금계좌	안 제4조
자	사람	안 제5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에게	안 제8조

다.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규정의 용어를 정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고, 새로운 조례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 법령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